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시적으로 한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하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고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혼합공장에서 운반하여 온 아스팔트를 도로상에 균일하게 포설하고,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다져 평탄한 노면을 형성하는 건설기계이며, 아스팔트 페이버(Paver)라고도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 피니셔 종류 및 작업 특성

크롤러식



- 무한궤도 기반으로 견인력과 안정성이 뛰어나며, 연약하거나 불안정한 지반에서도 안정적인 포설이 가능한 건설기계
- 대형공사 또는 광폭 포장공사에 적합하며,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

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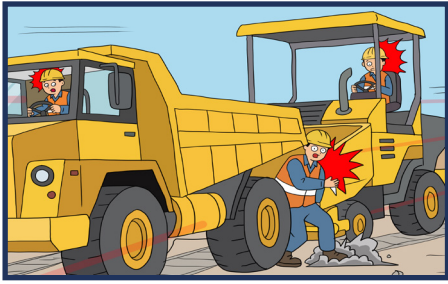


- 고무바퀴가 장착된 형태로, 이동성과 기동성이 뛰어나며 도심이나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 국내보다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식

스프레이젯



- 유제탱크와 유제 살포장치가 장착된 장비로 아스팔트를 포설하는 구간에 유제 살포 및 아스팔트 포설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건설기계



후진하던 덤프트럭과 아스팔트피니셔 사이에 끼임

도로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 포장작업 중 아스팔트피니셔 호퍼의 아스팔트를 정리하던 근로자가 후진하던 덤프트럭과 아스팔트피니셔 사이에 끼임

원인

차량이 후진으로 운행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책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운행



아스팔트 피니셔 작업 시 주의사항

- 1 연료, 유압유, 냉각수, 전기계통,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 기본 점검을 실시하고, 후방 시야 확보를 위한 장치(후방카메라, 경광등, 경고음 등)의 정상 작동 유무 확인 필요
- 2 작업 구간의 지반 상태, 경사도, 기존 노면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작업 구간에 타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작업자 간 의사소통 체계를 사전에 확인
- 3 저속 주행 등 급가속·급정지를 금지하며 덤프트럭에서 아스팔트를 공급받을 시 과적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트럭과의 간격 및 작업자가 장비 사이 진입하지 않도록 관리
- 4 작업자가 고온의 아스팔트로 인한 화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후진 및 회전 시 작업 반경 내 작업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 필요



필수 안전보건교육



노무제공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 대상** •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법** • 작업 배치 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시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제** • **교육시간 1/2 면제**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 **전체면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 내용**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 대상** •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
- 방법** • 작업 배치 전
- 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제** • **교육시간 1/2 면제**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전체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내용** • 공통사항 및 각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

※ 건설기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술기준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 제40조, 제86조, 제89조, 제91조 ~ 제93조, 제98조, 제99조, 제196조 ~ 제206조
- ☞ 공단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